

# 특별공급(생애최초) 구비서류

\* 모든 서류는 원본 및 **입주자 모집공고일(21년 2월 19일)** 이후 날짜로 발급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서류유형		해당서류	발급기준	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
필수	추가 (해당자)			
<input type="radio"/>		인감증명서	본인	「본인서명사실확인서 – 본인발급용」로 대체 가능
<input type="radio"/>		신분증(사본)	본인	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 등 재외동포 :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소사실증명서 / 외국인 :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
<input type="radio"/>		주민등록표등본	본인	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, 과거 주소변동사항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“전체포함”으로 발급
<input type="radio"/>		주민등록표초본	본인	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, 과거 주소 변동 사항 · 사유 및 발생일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
<input type="radio"/>	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	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포함) 전부 공개 “상세”로 발급
<input type="radio"/>		출입국사실증명서	본인	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, 제 23조 2항 7호에 의거 해외거주기간 확인을 위해 필수 제출 조회 기간 : 출생일로부터 모집공고일까지 (기록대조 시작일 : 생년월일 / 기록대조 종료일 : 공고일 현재)
<input type="radio"/>		소득세 납부 입증 서류	본인	청약 신청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5개년도 서류 입주자모집공고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납부 입증 제출서류 참조
	<input type="radio"/>	해외체류 관련 증빙서류	본인	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7항에 의거 공급신청자가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 종사 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	<input type="radio"/>	출입국사실증명서	세대원	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나머지 세대원(공급신청자 및 배우자 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및 공급신청자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미성년 자녀) 국내 거주 확인을 위해 제출 (기록대조 시작일 : 생년월일 / 기록대조 종료일 :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)
	<input type="radio"/>	주민등록표등본	배우자	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(상기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발급사항 참고하여 “전체포함”으로 발급)
<input type="radio"/>		복무확인서	본인	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하는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이 수도권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
<input type="radio"/>		혼인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	본인 : 혼인 및 신고일 확인 성명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하여 “상세”로 발급
<input type="radio"/>		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	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	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발급처 : 국민건강보험공단/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, 과거 이력 포함하여 발급 조회기간 : 생년월일부터 입주모집공고일 현재 단, 청약신청자의 직계존속의 경우 청약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의 등본상에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등재되지 않은 경우 가구원수 및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
<input type="radio"/>		소득증빙서류		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(단,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원의 소득 입증 서류) [소득증빙서류] 참조 단, 청약신청자의 직계존속의 경우 청약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의 등본상에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등재되지 않은 경우 가구원수 및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
<input type="radio"/>	<input type="radio"/>	비사업자확인 각서		견본주택에 비치(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)
<input type="radio"/>	<input type="radio"/>	주민등록표초본	피부양 직계존속	당첨자의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,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(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“전체포함”으로 발급)
<input type="radio"/>	<input type="radio"/>	혼인관계증명서(상세)	피부양 직계비속	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청약신청자의 만 18세 이상인 자녀를 ‘미혼인 자녀’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

\* 계약구비서류(인감증명서, 인감도장)는 접수 및 보관하지 않으므로, 계약 체결 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\* 대리인 계약 시 본인 계약 시 필요 서류 일체와 계약자 인감도장, 인감증명서(추가1통/본인발급용), 대리인 신분증, 대리인 도장, 신청 위임장(견본주택비치)이 필요합니다.

\* 당첨자 서류 적격 검수에 따라 사업주체에서 상기 서류 이외의 서류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. / 상기 사항과 입주자 모집공고 내용이 상이할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 내용이 우선합니다.